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핵심기술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는 협약, 체계개발단계는 선택적으로 적용(안 제6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가능

나. 국방연구개발 기술기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방위사업법 체계 대비 주관기관 선정, 사업관리에 관한 기획·관리·평가 기관의 권한 등을 대폭 강화(안 제5조, 제22조)

다. 성실수행 인정 대상사업의 범위를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협약체결로 추진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방연구개발 사업참여 제한기간, 사업

비 환수 등 제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0조)

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가능(안 제14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은 사업 종료 후 정부 지식재산권 지분 양도 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 소유 인정

마. 산·학·연의 국방과학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이전절차를 간소화(안 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 연도별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이 즉시 전력화되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에는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해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기 전에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전력화지원요소 및 형상의 변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⑦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절차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무기체계 연구개발시 국산화의 확보)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에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하여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 2. 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 3. 국산부품 개발의 관리절차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 기획등의 업무 지원기관 및 업무 범위) ① 법

제8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법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라목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법 제2조제5호마목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2조제5항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2.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 기획
3.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를 포함한다)
4.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약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7.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의 사업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
3. 제3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는 사업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3. 국방연구개발사업비의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및 평가결과의 통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개발성과물의 귀속·활용·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

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7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지급

2.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기관에게 지급하고,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에 지급

②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핵심기술개발사업
2. 법 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3. 법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사업비 분담비율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 부담금 중 현금·현물 비율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2.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8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은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부터 제1

6조, 제1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기획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성실수행 인

- 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 등, 사업비 환수, 연구개발 평가, 성실수행 인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재부가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재부가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철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간을 새로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9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2.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배포
4. 지식재산권의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제14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명시된 비율의 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지분율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시설·장비를 부담하는 등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창출하였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권의 허락을 받으려는 자는 모든 공동소유 기관에 각각 실시권의 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각 기술실시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누적 총액은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촉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술실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인 경우
 4.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는 경우
 5.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자와의 합의에 따라 기술료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16조(징수 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보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의 100

분의 40 이상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의 재투자는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분야로 한정한다.
- ③ 기술보유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7조(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정보
- 2.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목록과 기술데이터(국방과학기술의 특성을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품질보증요구서, 자료목록,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
- 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정하는 지식·정보

제18조(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를 위한 업무 등)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지식·정보를 체계

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2. 국내·외의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
3.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따른 지식·정보의 수집·목록화 및 관리
4.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배포

제19조(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경우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2. 이전대상 개발성과물의 내용
3. 이전대상 개발성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 국가가 사업비를 전부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이전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에 대한 승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경우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시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 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경우 개발성과물 활용 내역을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의 신청 절차 및 제3항의 승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이전 승인은 기술이전 자체 승인 내역을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제4호의 경우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술이전(실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4. 기술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반에 이미 공개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⑥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 기술보유기관은 민수실용화 가능한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으로 성과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대상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업체 · 연구기관 · 대학 ·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의 필수요원이라고 인정하는 자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

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단, 법 제2조제5항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실한 수행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2. 성능개량·기술이전·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3.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4.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제22조(권한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단,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핵심기술개발사업 및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제 관리 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련된 제5조제2항제6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호 및 제4호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업무(단, 제2항제2호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2조제5호 나목 내지 라목에 따른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단, 제1항제2호의 성과평가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3조제1호 및 4호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0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와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5. 제12조에 따른 제재부과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업무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② 제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시행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제1항, 제54조, 제61조의3, 제71조제1항제1호, 제71조제1항제1호의2, 제71조제1항제2호, 제7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 각항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 7)부터 9)까지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 8)의 경우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국방 R&D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1년 2개월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1년 2개월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9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9개월		
6)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개월 이내		
		1회	2회	3회 이상
7)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누설·유출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유출	2년	3년	4년
8)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1년 2개월 이내	1년 2개월 초과 1년 9개월 이내	1년 9개월 초과 2년 4개월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년 7개월 이내	1년 7개월 초과 28개월 이내	2년 4개월 초과 3년 2개월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2년	3년	4년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1년 2개월 이내	1년 2개월 초과 1년 9개월 이내	1년 9개월 초과 2년 4개월 이내

[별표 2]

사업비 환수사유별 환수 세부기준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77